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3호

「주택법」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. 1. 31.

국토교통부장관

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

성능검사기관 명칭	대표자	주 소	인정일자
국토안전관리원	김일환	경기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	2023.1.31.